

선	기관의장
람	

구 보

● 자치법규

[조 례]

제154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1544호 :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5
제154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9
제154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제1547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 조례	18
제1548호 :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154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23
제1550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9
제155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규 칙]

제73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36
제734호 :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47
제735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53
제736호 :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61

● 공 고

제2021-21호 :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공고	64
제2021-22호 :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고	67
제2021-23호 :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68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자 치 법 규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43호

서울특별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 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표창) 구청장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의용소방대 지원 목적 및 적용범위, 예산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안전중구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규정 (제1조 ~ 제2조)
- 나. 예산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 (제3조 ~ 제4조)
- 다. 지도 및 감독, 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을 규정(제5조 ~ 제6조)
- 라. 표창 및 준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제7조 ~ 8조)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44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학업우수장학금 및 특기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3조(장학금의 자격) ① 장학생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학업우수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재학 중 학과성적이 우수한 자
 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장학금 지급은 통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직전학기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 중·고·대학생 수의 비율에 따른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제6조(장학생 정원) ① 장학생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장의 15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급의 제한) ①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9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
3. 제3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학교장, 대학교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평가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총점 배분

계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경력	통장 상훈
100	50	40	1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당해 이전학기) 또는 특기

학업성 적 우수 분야	중· 고등학생	5등급(중학생은 C등급) 이내 과목수 / 전체 과목수				
		80%이상	70%이상 80%미만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대학생	전과목 평점평균				
		상위20%이내	상위20%초과 30% 이내	상위30%초과 40% 이내	상위40%초과 50% 이내	상위50%초과 60% 이내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50	40	30	20	10

나. 통장 경력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다. 통장 상훈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 훈격 1개만 인정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시장	구청장
점 수	10	9	8	7

3. 동점자 처리기준 :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정액지급 규정 마련 및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등을 마련하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제도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 나.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 다.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 마련
- 라.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45호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인 학생에게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3조(장학금의 종류) ① 새마을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자녀 장학금, 모범생 장학금 및 특기생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4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1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유공자는 지도자 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자녀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

- 2. 모범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 3. 특기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5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중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지부중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6조(선발) 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총장 등의 추천의견을 참작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완료 후 심사하여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선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수의 비율에 따른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한다.

제7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새마을지도자 수의 7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8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학기별로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급 등의 제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 이내로 한다.

③ 직전 학기의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과 구지회장이 협의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 1. 보호자의 새마을지도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 등을 받은 경우
- 3. 제4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 학교장,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서 정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제13조(재원의 확보) 구청장은 장학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등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 조례에 지급 대상 확대와 정액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규칙에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 나.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 다.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 마련
- 라. 서류 중복제출 절차 개선
- 마.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46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박물관을”을 “박물관의 건립 취지에 맞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예산의 범위에서 5억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용”을 “운영 및 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용시간”을 “운영 시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 이용 시간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제12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8.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사상자 가족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운영) ① 박물관 운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u>박물관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4조(운영) ① ----- ----- . ----- ----- ----- 박물관 관의 건립 취지에 맞게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 문성을 겸비한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예산의 범위에서 5억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이용 시간) ① 박물관 내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기본 <u>이용</u> 시간은 다음과 같다.</p> <p>1. 시설 <u>이용시간</u>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p> <p>2. 전시관 관람 목적 입장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p> <p>② (생 략)</p> <p>제12조(무료 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 5.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10조(이용 시간) ① ----- ----- <u>운영 및 이용</u> -----.</p> <p>1. --- <u>운영 시간</u> ----- -----</p> <p>2. 시설 이용 시간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무료 관람) ①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p> <p>7.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p> <p>8. 「<u>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9.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u></p>
<p><신 설></p>	<p>10. 「<u>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사자 가족</u></p>
<p><신 설></p>	<p>11. 「<u>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p>
<p>6. ~ 9. (생 략)</p>	<p>12. ~ 15. (현행 제6호부터 제9호까지와 같음)</p>
<p>②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 권고에 따라 이용료 의무감면 대상자를 추가하고 박물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공시설 이용료 의무감면 대상자 추가(제12조)
- 나. 수탁기관 자격 조건 추가(제4조)
- 다. 운영비 지원 규정 신설(제4조)
- 라. 이용시간 조정(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47호

서울특별시 중구 저장강박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 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함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3조)
- 다.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함 (제4조 ~ 제5조)
- 라.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내용에 대하여 규정함 (제6조)
- 마.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제7조)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48호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보훈예우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구청장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위문금 또는 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보훈의 달에 <u>30,000원</u> 지급</p> <p>4. 설, 추석에 <u>30,000원씩</u> 지급</p>	<p>제10조(보훈예우수당 및 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u>50,000원</u> ---</p> <p>4. ----- <u>50,000원</u>-----</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위문금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위문금을 인상하여 규정함
 (제10조 제3호, 제4호)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49호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 및 차상위 장애인 보장이 있는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시설입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를 말한다.
3. “장기입원자”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을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중증장애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시설입소자
2. 장기입원자

제4조(지원 기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월 30,000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시기) 교통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구의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신청 절차 및 자격) 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교통비 지급계좌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지

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통비 지급(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고 대리신청의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지급 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신청사항 등을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15일(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까지 구청장에게 교통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요청을 접수한 구청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거동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교통비를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 자격 및 지급 절차 등은 「장애인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⑤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지급기준일 이후에 신청한 사람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소급해서 지급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 ① 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월 지급기준일까지 그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지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때
2. 지원대상자가 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말소 등으로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교통비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3. 장애 정도의 변경 등으로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동장은 교통비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 등을 비롯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급 (□신규 □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또는 ○를 합니다.

(알뜰)

접수번호		접수일자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금융기관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을 신청(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지원대상자 본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통장사본
담당공무원 확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여부, 기초수급자 여부, 차상위 자격 여부, 시설풍소 여부, 장기입원 여부

위 임 장

대 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인(대상자 본인)은 교통비 지급 신청을 위 대리 신청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위임인(지원대상자 본인)과 수임인(대리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확인
(√ 체크)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	사후관리 종료 시까지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교통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요시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필요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뒤쪽)

교통비 대리수령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청사유	[]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 치매 또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수령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개월 간)

대 리 수 령 인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	-----	------

※ 아래 법정대리인함은 수급자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을 확정 받은 경우에만 적습니다.

법 정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통비 대리수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사실 다.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 3. 대리수령인이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유의사항	일정 소득 이하의 중증장애인의 교통비를 보전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 나. 지원 대상, 기준, 시기(제3조 ~ 제5조)
- 다. 신청 절차 및 지급방법(제6조 ~ 제7조)
- 라.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대상자 관리 등(제8조 ~ 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50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시민건강과”를“감염병관리과, 시민건강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지역보건법」제9조”를“「지역보건법」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구에 보건소를 설치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보건소) ① 보건소에는 보건위생과, <u>시민건강과</u>, 건강관리과 및 의약과를 둔다.</p> <p>② 보건소장은 「<u>지역보건법</u> 제9조에 정한 소관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p> <p>1. 2. (생략)</p> <p>③ (생략)</p>	<p>제10조(설치) ① ----- -----<u>제10조</u>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8조</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보건소) ① ----- ----- <u>감염병관리과</u>, <u>시민건강과</u>-----.</p> <p>② ----- 「<u>지역보건법</u> 제11조----- -----.</p> <p>1.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담기구인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1과 신설 : 감염병관리과 (제12조제1항)

나. 보건소 설치 및 분장사무 명시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문 수정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551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1,242명”을“1,2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1,217명”을“1,22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제4조 관련)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직 속 기 관	동
총 계	1,25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42	-			
3급	1	1			
4급	6	5		1	
5급	59	30	1	13	15
6급 이하 계	1,174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 이하 계	4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중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24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1,217명</p> <p>2. (생 략)</p> <p>[별표 3] (제4조 관련) <u>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width: 10%;">총 계</th> <th style="width: 10%;">본 청</th> <th style="width: 10%;">의 회 사무 과</th> <th style="width: 10%;">직 속 기관</th> <th style="width: 10%;">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242</td> <td colspan="4">-</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 colspan="4">-</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234</td> <td colspan="4">-</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6</td> <td>5</td> <td></td> <td>1</td> <td></td> </tr> <tr> <td>5급</td> <td>58</td> <td>30</td> <td>1</td> <td>12</td> <td>15</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1,167</td> <td colspan="4">-</td> </tr> <tr> <td>전문경력관 계</td> <td>2</td> <td colspan="4"></td> </tr> <tr> <td>별정직 계</td> <td>7</td> <td colspan="4">-</td> </tr> <tr> <td>5급 상당</td> <td>3</td> <td>1</td> <td>2</td> <td></td> <td></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4</td> <td colspan="4">-</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 과	직 속 기관	동	총 계	1,24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34	-				3급	1	1				4급	6	5		1		5급	58	30	1	12	15	6급 이하 계	1,167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 이하 계	4	-				<p>제2조(정원의 총수) ----- ----- 1,250명----- -----.</p> <p>1. ----- 1,225명</p> <p>2.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제4조 관련) <u>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0%;">기관별 직급별</th> <th style="width: 10%;">총 계</th> <th style="width: 10%;">본 청</th> <th style="width: 10%;">의 회 사무 과</th> <th style="width: 10%;">직 속 기관</th> <th style="width: 10%;">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1,250</td> <td colspan="4">-</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 colspan="4">-</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1,242</td> <td colspan="4">-</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6</td> <td>5</td> <td></td> <td>1</td> <td></td> </tr> <tr> <td>5급</td> <td>59</td> <td>30</td> <td>1</td> <td>13</td> <td>15</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1,174</td> <td colspan="4">-</td> </tr> <tr> <td>전문경력관 계</td> <td>2</td> <td colspan="4"></td> </tr> <tr> <td>별정직 계</td> <td>7</td> <td colspan="4">-</td> </tr> <tr> <td>5급 상당</td> <td>3</td> <td>1</td> <td>2</td> <td></td> <td></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4</td> <td colspan="4">-</td> </tr> </tbody> </table>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 과	직 속 기관	동	총 계	1,25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42	-				3급	1	1				4급	6	5		1		5급	59	30	1	13	15	6급 이하 계	1,174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 이하 계	4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 과	직 속 기관	동																																																																																																																																																								
총 계	1,242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34	-																																																																																																																																																											
3급	1	1																																																																																																																																																											
4급	6	5		1																																																																																																																																																									
5급	58	30	1	12	15																																																																																																																																																								
6급 이하 계	1,167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 이하 계	4	-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 과	직 속 기관	동																																																																																																																																																								
총 계	1,250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242	-																																																																																																																																																											
3급	1	1																																																																																																																																																											
4급	6	5		1																																																																																																																																																									
5급	59	30	1	13	15																																																																																																																																																								
6급 이하 계	1,174	-																																																																																																																																																											
전문경력관 계	2																																																																																																																																																												
별정직 계	7	-																																																																																																																																																											
5급 상당	3	1	2																																																																																																																																																										
6급 상당 이하 계	4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코로나19 대응 전담기구인 감염병관리과 신설에 따른 전담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 (제2조)
-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제4조, 별표3)

[규 칙]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33호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녀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과 ○○동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 ○○동분회장을 거쳐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중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중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
3. 학교장 또는 총장 등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구문고회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서울특별시 지부중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절차) 구지회장은 공정한 장학생선발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별표 1 선발기준에 따라 심

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완료 후 지급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 또는 총장 등에게 통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학생 선발기준(제4조 관련)

1. 총점배분

가. 유공자자녀 장학금

계	새마을 유공	새마을지도자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100	60	30	10

나. 모범생·특기생 장학금

계	학업성적 또는 특기	새마을지도자 경력	새마을 유공
100	60	30	1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유공자자녀 장학금

(1) 새마을 유공

훈격	새마을 훈장·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시장· 새마을 단체회장 표창	구청장· 구새마을 단체회장 표창	새마을사업 중 부상 당한 경우	그 밖의 유공
점수	60	58	56	54	52	50	48

※ 새마을사업 중 사망한 지도자의 자녀는 배점 없이 장학생선발 우선대상에 둔다.

※ 상위 훈격 및 최근 서훈(표창) 1개만 인정한다.

(2) 새마을지도자 경력

활동경력	6년이상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1년미만
점수	30	28	26	24	22	20	18

(3)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분야	중· 고등학생	해당학년 재학생 중 석차 백분율				
		10/100 이내	20/100 이내	30/100 이내	40/100 이내	50/100 이내
예·체능, 특기 분야	대학생	평점평균(점/ 점 만점)				
		90/100 이상	80/100 이상	70/100 이상	60/100 이상	50/100 이상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시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수		10	9	8	7	6

나. 모범생·특기생 장학금

(1)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분야	중 고 등 학 생	해당학년 재학생 증 석차 백분율				
		10/100 이내	20/100 이내	30/100 이내	40/100 이내	50/100 이내
	대 학 생	평점평균(점/ 점 만점)				
		90/100 이상	80/100 이상	70/100 이상	60/100 이상	50/100 이상
예·체능, 기 능 분 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사도대표급, 시장 또는 시·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구의 대표급, 구청장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60	55	50	45	40

(2) 새마을지도자 경력

활 동 경 력	6년이상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점 수	30	28	26	24	22	20

(3) 새마을 유공

훈 격	새마을 훈장·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시장· 새마을 단체회장 표창	구청장· 구새마을 단체회장 표창	새마을사업 중부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유공
점 수	10	9	8	7	6	5	4

※ 동점자발생 등 배점표에 따른 순위산정 곤란시 다음의 순위로 우선 선정한다.

- 1순위 : 유공자녀 장학금
- 2순위 : 모범생 장학금, 특기생 장학금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정보 수집·이용 기관명 :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중구지회
2. 정보 수집·이용 범위와 사용목적
 - 수집·이용범위 :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학교명, 학년, 반(과), 성적(특기), 지도자경력, 공적사항, 가족사항, 재산사항, 계좌정보
 - 사용목적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및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새마을 장학금 지급대상 선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3. 개인정보 보관기한 : 1년(기한 경과 후 파기)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여부
귀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선발 및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해당란에 √표시)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5. 수집 및 이용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20 년 월 일

관계 : 생년월일 : 성명 : (인 또는 서명)

-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____학년도 새마을 장학생 추천서

1. 추천인원 : 명(남 명, 여 명)

구 분	계(명)	중 학 생(명)	고 등 학 생(명)	대 학 생(명)
유공자자녀장학생		(남 ,여)	(남 ,여)	(남 ,여)
모범장학생		(남 ,여)	(남 ,여)	(남 ,여)
특기장학생		(남 ,여)	(남 ,여)	(남 ,여)

2. 추천대상자 명단

장 학 생				새마을 지도자				추천 순위
성 명	학교명	학 년	연 령	장학생 종 류	장학생과의 관 계	성 명	지도자 경 령	

상기와 같이 ____학년도 ____학기 새마을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첨부 :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 1부.

년 월 일

추천자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중구협의회장 직인
 서울특별시중구새마을부녀회장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중구지부회장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중구지회장 귀하

-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장학증서

장 학 증 서

학교	학년	반(과)
학교		과

위 학생은 「서울특별시 중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학년도 학기 새마을 ○○○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 및 장학금을
 수여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중구지회장 (인)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본 시행규칙에 장학생 선발기준을 구체화하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제도를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학금 지급 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 나.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마련
- 다.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지급 근거 마련
- 라. 서류 중복제출 절차 개선
- 마.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34호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중 “보건위생과장·시민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를 “보건위생과장·시민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로 한다.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감염병 예방대응 및 방역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예방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신종감염병 및 재출현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급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결핵검진 및 등록 치료관리에 관한 사항
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 8.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 9. 감염병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 10. 감염우려시설 지정 및 폐쇄에 관한 사항
- 11.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12. 취약지 및 환자발생지 방역, 소독
- 13. 감염병 접촉자(자가격리자) 총괄 관리

제40조를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보인”을 “노인”으로 하며, 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 통합 건강 돌봄에 관한 사항
- 9. 어르신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41조를 제4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5호·제6호·제7호·제8호·제10호를 삭제하며, 제3호·제4호·제9호·제11호·제12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한다.

제42조부터 제43조까지를 각각 제43조부터 제44조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보건소) 소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보건위생과장·시민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의무사무관·지방약무사무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p> <p><신 설></p>	<p>제38조(보건소) ----- -----보 건위생과장·시민건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u>감염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u>, 건강관리과장은----- ----- -----.</p> <p>제40조(감염병관리과) <u>감염병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감염병 예방대응 및 방역에 관한 사항</u> 2. <u>감염병 예방·교육·홍보에 관한 사항</u> 3. <u>신종감염병 및 재출현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4. <u>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5. <u>급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u> 6. <u>결핵검진 및 등록 치료관리에 관한 사항</u> 7. <u>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u> 8. <u>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u> 9. <u>감염병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u> 10. <u>감염우려시설 지정 및 폐쇄에 관한 사항</u> 11. <u>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 12. <u>취약지 및 환자발생지 방역, 소독</u> 13. <u>감염병 접촉자(자가격리자) 총괄 관리</u>

제40조(시민건강과) 시민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역보건계획, 평가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
- 2. 도시 공공 보건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3. 보건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 4.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 5.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 6.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
- 7. 노인보건·치매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41조(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생 략)
- 2.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3. 예방접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4. 금연사업 등에 관한 사항
- 5.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6. 급성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 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사항
- 8. 신종감염병 및 재출현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 10. 보건에 관한 실험, 검사에 관한 사항
- 11.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 12.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 13. 방사선 촬영에 관한 사항
- 14. 국가암 검진에 관한 사항

제41조(시민건강과) 시민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지역보건계획, 평가 및 통계 등에 관한 사항
- 2. 도시 공공 보건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3. 보건분소 운영에 관한 사항
- 4.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 5. 건강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
- 6. 방문간호에 관한 사항
- 7. 노인보건·치매에 관한 사항
- 8. 통합 건강 돌봄에 관한 사항
- 9. 어르신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42조(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현행과 같음)
(삭 제)
- 2. 예방접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금연사업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4.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삭 제)
- 5.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 6.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p>15.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6.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p> <p>제42조(의약과) (생략)</p> <p>제43조(동장의 직급) (생략)</p>	<p>7. 방사선 촬영에 관한 사항 8. 국가암 검진에 관한 사항 9.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 10. 암환자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p> <p>제43조(의약과) (현행과 같음)</p> <p>제44조(동장의 직급) (현행과 같음)</p>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전담기구인 감염병관리과의 업무를 분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설부서인 감염병관리과의 업무분장 규정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35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총 계		1,250	812	25	116	297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42	808	21	116	297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9	30	1	13	15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건축1,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보건·간호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8			8	
6급 소계		241	163	3	24	51
행정		153	97	3	9	44
세무		15	15			
사회복지		9	5			4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전기2,화공1)		5	5			
보건		1			1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6			6	
환경		1	1			
시설(토목8,건축6,지적3,디자인1, 도시계획2)		20	20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행정4,토목1,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2			2	
운전		3	3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7급 소계		379	263	9	37	70
행정		218	142	6	9	61
세무		21	21			
사회복지		19	9		1	9
전산		3	3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전기6,화공3)		14	14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14			14	
시설(토목15,건축12,자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시설관리		5	5			
운전		10	10			
전기운영(전기)		1	1			
8급 소계		354	242	2	29	81
행정		191	120	2	6	63
세무		32	32			
사회복지		29	11			18
전산		6	6			
방호		2	2			
공업(기계4,전기5,화공1)		10	10			
녹지		6	6			
보건		4			4	
의료기술		5			5	
간호		14			14	
환경		2	2			
시설(토목18,건축10,자적7,교통시설2)		37	37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1	1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등
9급 소계		200	102	6	12	80
행정		52	20	2	2	28
세무		14	14			
사회복지		34	6			28
전산		1			1	
방호		6	5	1		
공업(기계5,전기9)		14	13	1		
녹지		3	3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건축3,지적4)		13	13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1	1			
위생		4	4			
운전		36	16	2	3	15
전기운영(전기)		2	2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0	1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기관별	총계	행정	의회사무과	진수기관	등		직렬\기관별	총계	행정	의회사무과	진수기관	등		
총 계	1,242	812	25	108	297		총 계	1,250	812	25	118	297		
경무직 계	1	1					경무직 계	1	1					
무 한 한	1	1					무 한 한	1	1					
일반직 계	1,234	808	21	108	297		일반직 계	1,242	808	21	118	297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8	5		1			4급 소계	8	5		1			
서기관	8	8					서기관	8	8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8	30	1	12	15		5급 소계	59	30	1	13	15		
행정	38	21	1	14	14		행정	38	21	1	14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 사회복지	2	1			1		행정 사회복지	2	1			1		
행정 복지	1	1					행정 복지	1	1					
행정 보건	2			2			행정 보건	2			2			
행정 시설	4	4					행정 시설	4	4					
의무 안무	1			1			행정, 보건, 간호	1			1			
보건 의료기술 의무간호	1			1			의무 안무	1			1			
의무	8			8			보건 의료기술 의무간호	1			1			
6급 소계	298	181	9	21	51		6급 소계	241	183	9	24	51		
행정	152	97	3	8	44		행정	153	97	3	9	44		
세무	15	15					세무	15	15					
사회복지	8	4			4		사회복지	9	5			4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복지	3	3					복지	3	3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안무	2			2			안무	2			2			
간호	5			5			간호	6			6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8, 건축8, 지적3, 디자인1, 도시계획1)	19	19					시설(토목8, 건축8, 지적3, 디자인1, 도시계획2)	20	20					
시설(토목 건축)	1	1					시설(토목 건축)	1	1					
행정 세무	1	1					행정 세무	1	1					
행정 사회복지	3				3		행정 사회복지	3				3		
행정 방송통신	1	1					행정 방송통신	1	1					
행정 전산 방송통신	1	1					행정 전산 방송통신	1	1					
행정 보건	3	1		2			행정 보건	3	1		2			
행정 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행정 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 의료기술	1			1			보건 의료기술	1			1			
공업(화공) 보건 환경	1	1					공업(화공) 보건 환경	1	1					
보건전료	2			2			보건전료	2			2			
취생	0	0					취생	0	0					
문건	3	3					문건	3	3					
전기무업(전기)	0	0					전기무업(전기)	0	0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보통	의사 사무관	전문 기관	등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보통	의사 사무관	전문 기관	등
7급 소계		572	269	9	90	70	7급 소계		579	269	9	97	70
행정		217	142	6	8	61	행정		218	142	6	9	61
세무		21	21				세무		21	21			
사회복지		18	8		1	9	사회복지		19	9		1	9
건강		3	3				건강		3	3			
숙기		3		3			숙기		3		3		
방포		6	6				방포		6	6			
공업(기계5, 전기6, 화공9)		14	14				공업(기계5, 전기6, 화공9)		14	14			
복지		8	8				복지		8	8			
수위		1	1				수위		1	1			
보건		7	3		4		보건		8	3		5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환경		1	1				환경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9			9		간호		14			14	
시설(토목15,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시설(토목15,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2, 교통시설2)		38	38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2	2			
위생		3	3				위생		3	3			
시설관리		5	5				시설관리		5	5			
문건		10	10				문건		10	10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기계운영(기계1)		0	0				기계운영(기계)		1	1			
능률운영(원예)		1	1				사무운영(워드1)		1	1			
8급 소계		357	240	2	84	81	8급 소계		354	242	2	29	81
행정		190	120	2	5	63	행정		191	120	2	6	63
세무		32	32				세무		32	32			
사회복지		28	10			18	사회복지		29	11			18
건강		7	7				건강		8	8			
방포		2	2				방포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복지		6	6				복지		6	6			
보건		4			4		보건		4			4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호		20			20		간호		14			14	
환경		2	2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7, 교통시설1)		36	36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7, 교통시설1)		37	37			
방재안전		1	1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1	1				시설관리		1	1			
문건		6	6				문건		6	6			
전기운영(전기)		3	3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1)		1	1				사무운영(워드1)		1	1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9급 소계		202	106	6	10	80	9급 소계		200	102	6	12	80
행정		50	20	2		28	행정		52	20	2	2	28
세무		14	14				세무		14	14			
사회복지		34	6			28	사회복지		34	6			28
전산		1	0		1		전산		1			1	
방호(경비6, 방호1)		7	6	1			방호		6	5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3	3				녹지		3	3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6, 건축3, 지적4)		13	13				시설(토목6, 건축3, 지적4)		13	13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시설관리		1	1			
운전		36	16	2	3	15	위생		4	4			
전기운영(전기)		4	4				운전		36	16	2	3	15
기계운영(기계)		3	2			1	전기운영(전기)		2	2			
사무운영(워드)		12	3		1	8	기계운영(기계)		3	2			1
전문경력관 소계		2	2				사무운영(워드)		10	1		1	8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전문경력관 소계		2	2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나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별정직 계		7	3	4			다군(비상대비·민방위 요원)		1	1			
5급상당 소계		3	1	2			별정직 계		7	3	4		
비서		1	1				5급상당 소계		3	1	2		
전문위원		2		2			비서		1	1			
6급상당 소계		1	1				전문위원		2		2		
비서		1	1				6급상당 소계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비서		3	1	2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신규 행정수요 담당인력 확충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인)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36호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기 중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u>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u>, 법무법인(공단),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후단 신설></p> <p>② (생략)</p> <p>1 ~ 4. (생략)</p> <p><신설></p> <p>5. <개정안 6호로 변경></p> <p>③ (생략)</p>	<p>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u>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u>, 법무법인(공단),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u>이 경우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임기 중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p> <p>6. (현행 5호와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법률고문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률고문 위촉 대상의 확대 및 공모방식의 도입을 위해 해당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법률고문 위촉대상을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로 확대
- 나. 법률고문 위촉시 공개모집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규정 신설
- 다. 임기 중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법률고문에 대한 위촉해제 근거 규정 신설

공 고

◎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21-21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 공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구청장 및 중구의회 지역구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및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인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 체류자격 취득 후 3년 경과된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 11.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 중구청장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시 받아야 할 서명인 수
중 구 청 장		113,434	22,688
동 명	소 공 동	1,811	362
	회 현 동	4,924	985
	명 동	2,770	554
	필 동	3,710	742
	장 충 동	4,298	860
	광 희 동	4,996	999
	을 지 로 동	1,758	352
	신 당 동	7,305	1,461
	다 산 동	12,995	2,599
	약 수 동	15,195	3,039
	청 구 동	12,539	2,508
	신당 제5동	9,549	1,910
	동 화 동	9,191	1,838
	황 학 동	11,565	2,313
	중 림 동	10,828	2,166

▣ 중구의회 지역구의원

구 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시 받아야 할 서명인 수
중구 가선거구		29,468	5,894
동명	소 공 동	1,811	295
	명 동	2,770	295
	광 희 동	4,996	295
	을 지 로 동	1,758	295
	신 당 동	7,305	295
	중 립 동	10,828	295
중구 나선거구		30,305	6,061
동명	신당 제5동	9,549	303
	동 화 동	9,191	303
	황 학 동	11,565	303
중구 다선거구		25,927	5,185
동명	회 현 동	4,924	259
	필 동	3,710	259
	장 충 동	4,298	259
	다 산 동	12,995	259
중구 라선거구		27,734	5,547
동명	약 수 동	15,195	277
	청 구 동	12,539	277

●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21-22호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수 공고

「지방자치법」제1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 주민총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1. 11.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기준일 2020. 12. 31.)

구 분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권자 총수
총 수	113,433 명
주 민 수	112,499 명
외국인 수	934 명

● 서울특별시중구공고 제2021-23호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공고

「주민투표법」제5조와 같은 법 제9조 및「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제3조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 주민등록표상 19세 이상 주민 총수, 외국인등록표상 영주 거주 자격을 갖춘 19세 이상 외국인 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 1. 11.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기준일 2020. 12. 31.)

구 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총 수	113,584 명
주 민 수	112,499 명
외국인 수	1,085 명